**주식회사 정관 Điều lê công ty cổ phần**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

2. 전기제품 및 전기부품의 매매

3. 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공고의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만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만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4종류로 한다.

**[제9조] (주권의 불소지)**

본 회사는 주권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서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주권 및 그 취득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할 때에도 위와 같다.

**[제12조] (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분할, 병합,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 는 본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의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주권상실의 경우에 준한다.

**[제13조] (수수료)**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년 ○월 ○일부터 정기주주 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신고)**

주주,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 및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6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주주 중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결의사항)**

주주총회는 상법 소정의 사항 이외에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본금을 초과하는 영업용 자산의 취득, 자본금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 자본금을 초과하는 제3자의 채무보증을 결의한다.

**[제19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2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그 경과의 요령과 결의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2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본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23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다만,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5조] (이사와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 원수를 결하지 않고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사장 1명을 선임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한다.

**[제2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제17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제6장 계산

**[제32조] (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33조] (재무제표의 작성)**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34조] (이익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영업연도 이익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2. 별도적립금 ─ 약간

3. 주주배당금 ─ 약간

4. 임원상여금 ─ 약간

5. 차기이월금 ─ 약간

**[제35조] (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주주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된다.

제7장 부칙

**[제36조] (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본 회사성립일로부터 서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7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발기인 ○ ○ ○ (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발기인 ○ ○ ○ (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발기인 ○ ○ ○ (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이하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 **Từ mới:**

총칙 Quy tắc, điều khoản

총수 Tổng số, toàn bộ

주권 Cổ phiếu, chứng khoán, chủ quyền

양도 Sự nhượng lại, chuyển qua cho người khác

청구하다 Thỉnh cầu, đòi hỏi

첨부하다 Đính, buộc, cột

말소 Sự hủy bỏ

훼손 Sự tổn thương, sự bôi nhọ

진위 Thực và giả

직무 Chức vụ, việc đảm nhận

대행하다 Thi hành gián tiếp

주주총회 Đại hội cổ đông

선임하다 Bổ nhiệm, chỉ định

손익계산서 Tính toàn lời lỗ

대차대조표 Bảng cân đối tài sản

차기이월금 Tiền chuyển sang kỳ sau